

호주 特許制度 考察(完)

商標에 관한 情報

I. 商標登錄出願 방법

1. 登錄原簿

商標登錄原簿는 A, B, C, D 4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C와 D부분은 전문적인 것으로서 일반업자에게 항상 필요한 것은 아니다. 出願人은 이에 관해서 반드시 「商標法 1955」중 XI와 XII 부분을 참고해야 한다.

A부분에 등록되려면 표장은 독특해야 하며 (식별력을 지녀야 하며) 다음중 한가지로 구성되거나 한가지를 포함해야 한다.

- a) 특별한 방법으로 표현된 사람이름
- b) 出願人 또는 (출원인의) 영업상 전임자의 서명
- c) 造語
- d) 登錄할 商品 또는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묘사하지 않는, 그리고 姓이든 地名이든 이것의 평범한 의미에 따라 登錄할 商品 또는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묘사하지 않는 단어
- e) 문자와 숫자를 포함하면서 특별하거나 고유한 방법으로 표현된 도형, 또는 단어와 도형의 결합체

본래는 독특하지 않으나 오랫동안 사용되어 온 표장은 사용증명이 제출될 경우 A부분에 登錄될 수 있다.

B부분에의 등록은 A부분 등록에 필요한 독특성(식별성)의 정도(등급)을 갖고있는 것은 아니나 독특해질 가능성이 있다.

商標조사는 캔버라에 있는 특허국(The Patent, Trademarks and Designs Offices), 또는 허버트(Hobart)를 제외한 각주의 수도에

있는 특허지청에서 행해질 수 있는데, 이는 동일하거나 현혹시킬 정도로 類似한 商標가 既登錄되었거나 出願증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이다.

「商標法 1955」는 “어떤 일정한 단어나 도형들은 登錄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同法 第29條와 「商標規則(The Trade Marks Regulations) 第5項을 참고해야 한다.

2. 出願書

商標登錄出願書는 아래와 같은 것으로 구성된다.

1) 출원서(형식1) - 다음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 a) 出願人 성명
- b) 出願人이 개인일 경우 직업, 出願人이 會社, 企業 또는 단체일 경우는 조직의 정관 및 州의 법령에 의한 행위
- c) 出願人의 정확한 주소
- d) 登錄되고자 하는 登錄원부의 부분(A, B, C 또는 D)
- e) 등록되고자 하는 商品 또는 서비스. 이 설명에는 반드시 상표가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 f) 商品 또는 서비스가 속하는 類(「상품 및 서비스 분류표」 색인을 참고). 등록하려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한가지 이상의 類에 속할때는 각각 별도의 출원을 해야 한다.
- g) 오스트레일리아內的 營業소 주소
- *h) 영구적인 형태로의 상표의 사본. 이것은 필요하다면 出願人의 이름이 들어있으면서 出願書 양식에 추가된 다른 서류의 날장에 부

착될 수 있다.

i) 날짜 및 出願人의 서명. 出願人이 개인이 아닐 경우 출원서에 회사, 기업 또는 단체를 대표하여 서명한 사람은 반드시 그가 그렇게 하도록 권한을 위임받았는지 여부를 표시해야 하며, 그 조직에서의 자신의 직위를 써야한다. 합법적인 辯護士, 辨理士, 商標代理人의 자격을 위임받은 사람, 또는 혼자 유일하게 영구적으로 出願人에게 고용되어 있는 사람은 出願書에 서명할 수 있고 출원인을 대신해서 서명을 행할 수 있다. 辨理士는 유일하게 혼자 出願人에게 고용되어 있지 않은 한 대리인이 될 수 없다.

*2) Form 1에서 묘사된 상표를 내포하고 있는 Form 2의 복사본 7장(추가되는 상표).

*3) 만일 商標가 평범한 형태의 단어 또는 단어군과 다르다면 5장의 부착되지 않은 표식이 필요하다.

4) 둘 또는 그이상의 다른 商品들을 등록할 때는 「상표가 사용되고 있는지(사용될 예정인지) 여부」와 「누구에 의해서」를 나타내는 설명서가 필요하다.(단, 하나의 商品을 등록하고자 할때는 사용목적을 표시해야 한다.)

5) 하나 또는 그이상의 서비스를 하나의 類에 登錄하고자 할때는 그 표장이 사용되고 있는지(사용될 예정인지) 여부, 누구에 의해 표장이 사용되고 있는(사용되어질) 지역등을 나타내는 설명서가 필요하다.

註)*이러한 서류를 요구하는 규칙은 현재 제출절차를 간소화하는 쪽으로 개정중이다. 出願人은 당분간, 上述된 서류에 우선하여 아래의 서류들을 제출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 1) 보통 타자친 문서에서와 같은 단어상표의 경우 출원형식의 복사본 2장
- 2) 기타 다른 표장의 경우 출원형식 복사본 2장과 정확하게 완성된 走査版(S-canning sheet) 1장이 필요하다. 이 走査版은 요즘 商標조사나 出願公告를 위해 사용되는 시스템의 영상을 비

추는 光版을 위해 필요하다.

(주의할 점)

- 標章은 出願형식 및 주사판의 적당한 부분에 놓여져야 한다.
- 標障를 부착하기 전에 반드시 주사판에 있는 지시사항을 읽고 따라야 한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3. 出願後의 節次

出願人은 出願書를 제출했다고 해서 登錄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주지해야 한다.

出願書는 特許局(주소: P. O. Box 200, Woden, A. C. T. 2606, 또는 Scarborough House, Phillip, A. C. T)이나 6개의 특허지청 중 어느 곳이라도 제출되어야 한다.

- Sydney
189-193 Kent Street, N. S. W. 2000
Tel(02) 27-9121
- Melbourne
150 Lonsdale Street, Vic. 3000
Tel(03) 662-2050
- Brisbane
280 Adelaide Street, Qld. 4000
Tel(07) 225-2277
- Adelaide
25 College Road, Kent Town, S. A. 5067
Tel(08) 42-5665
- Perth
Eastpoint Plaza, 23 Adelaide Terrace, W. A. 6000
Tel(09) 325-2575
- Hobart
M. L. C. Building, 65 Murray Street, Tas. 700
Tel(002) 20-5537

特許局은 出願書가 심사될때까지는 등록가능성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지 않을 것이다. 이 기간은 보통 제출일로부터 수개월이나 정당한 사유를 보여주는 요청이 있을 경우 단축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단축은 예외적인 상황에서

만, 예를들면 어떤 出願人의 商標에 대한 侵害가 우려되거나 발생할 경우, 허용된다.

출원이 심사후 인정되면(받아들여지면) 商標公報에 게재된다.

공고후 누구든지 3개월의 법정기한내에 商標의 登錄에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異議申請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서술하여 제출함으로써.

아무런 이의신청이 없거나 異議申請이 있더라도 기각되면 그 商標는 登錄料를 납부하면 등록될 것이며 등록증이 발송될 것이다. 登錄은 出願日로부터 처음 7년동안 유효하며 上述된 登錄料를 납부하면 14년의 후속사용기간으로 更新된다.

어떤 商標가 登錄되었다고 허위표시하는 것은 위법이다.

전문적인 도움은 商標代理人, 登錄된 辨理士와 합법적인 辯護士들로부터 얻을 수 있다. 特許局 직원들은 公的인 문제에 관해서만 조언이 가능하다.

비용-出願料는 出願書 제출때 지불될 수 있고 登錄비용은 商標가 받아들여진 다음 요구될 때 지불될 수 있다.

현행요금에 관한 情報는 特許局이나 특허지청 어느 곳에서나 얻을 수 있다.

商標登錄에 관한 더욱 상세한 정보와 조언을 담고있는 출원인을 위한 안내책자는 特許局, 또는 특허지청 어느곳에서나 우편료없이 구입할 수 있다.

II. 商標에 관한 質疑·應答

1. Q : 商標란?

A : 이것은 단어, 상징 또는 도형(또는 이들의 결합체)으로서 市場에서 어떤 한 개인이나 조직의 商品 또는 서비스를 他人의 상품 또는 서비스와 구별하기 위해 사용된다.

2. Q : 商品 또는 서비스 종류에는 어떤것이 포함되어 지는가?

A : 「商品 및 서비스 국제분류표」는 商品을 모두 34個類로 分類하고, 추가로 서비스를 8個

類로 分類하고 있다 : 35類 : 광고업, 36類 : 보험 및 금융업, 37類 : 건설업 및 수선업, 38類 : 통신업, 39類 : 운송 및 저장업, 40類 : 자료취급업(material treatment), 41類 : 교육 및 오락업, 42類 : 기타

3. Q : 반드시 商標가 登錄된 후라야만 사용이 가능한가?

A : 그렇지 않다. 商品 또는 서비스에 상표를 적용하길 원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그 商標를 登錄시킬 것이 요구되지 않는다. 만일 商標가 아직 사용되고 있지 않거나 類似商品이나 서비스를 대비해서 등록되지 않았다면 소유자는 그 商標를 사용함에 따라 관습법적 권리를 얻을 수 있다.(그러나) 등록은 추가로 법적 권리를 발생시킨다.

4. Q : 商標登錄은 어떤 권리를 부여하는가?

A : 商標登錄은 商標權者에게 지명된 상품이나 서비스를 위해서 商標를 사용할 배타적 권리와 법과 商標登錄계에 의해 주어지는 모든 상황에의 종속을 준다. 그리고 商標權者로 하여금 商標侵害에 대해 안심할 수 있게 해준다.

5. 商標가 登錄되지 않은 경우 어떤 권리가 존재하는가?

A : 상표를 사용하면 관습법적 권리가 주어지며, 명성이 확립되어온 商標의 소유자는 현혹시킬 정도로 유사한 商標를 사용하는 어떤 사람에게도 취소조치를 취할 수 있다.

6. Q : 登錄은 얼마동안 지속되는가?

A : 7년의 등록후 매 14년마다 更新登錄비용만 납부하면 무한정 지속될 수 있다.

7. Q : 更新費用이 납부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A : 登錄이 경과되고 商標가 登錄原簿에서 抹消된다.

8. Q : 商標을 가능케 하는 요소는 무엇인가?

A : 商標은 본래적으로든 사용에 의해서든 반드시 식별력을 지녀야 한다. 본래 登錄이 가능한 商標은, a) 특별하고 고유한 방법으로 표현된 이름, b) 출원인 또는 영업상 전임자의 서명, c) 造語, d) 상품 및 서비스를 묘사하지 않고 주로 姓이나 地名을 묘사하지 않는 기타 다른 단어, e) 독특한(식별력 있는) 도형 또는 문자와 도형의 독특한 결합체등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商標은 登錄原簿중 A부분에 登錄될 수 있다.

9. Q : 登錄原簿에 다른 부분도 있나?

A : 또한 B, C, D부분이 있다.

B부분에 登錄될 자격이 있는 商標은 A부분에의 登錄에 요구되는 식별력을 지닐 필요는 없다. 그러나 독특해질 가능성은 있어야 한다. 登錄의 대부분이 A와 B부분에 있다.

C부분은 商品 또는 서비스가 특별한 명세서와 기준에 적합한지를 증명하기 위해 出願된 증명표장을 담고 있다.

D부분에의 登錄은, 다른 하나의 기업이나 개인에 의해 다른 商品 또는 서비스에 商標가 사용되는 것은 현혹과 혼돈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게된 A부분 登錄에 기초하고 있다. D부분 登錄은 '방어적'이라 언급되어지며 상표사용계획은 요구되지 않는다.

10. Q : 반드시 A나 B부분에 登錄된 商標을 사용해야 하나?

A : 그렇다. 登錄이 받아들여지기 전에 出願인은 그가 商標을 사용하려한다는 것을 特許局 登錄계에 만족시켜야 한다. 登錄되고나서 3년 동안 商標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他人에 의한 出願이 이 商標 登錄 때문에 위협을 받게될 경우 登錄원부에서 삭제되는 근거가 된다.

11. Q : 상표권자가 스스로 商標을 사용하려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밖의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생산할 자격을 주

어 그 商標을 商品 또는 서비스에 적용시키려 할 경우 어떻게 되나?

A : 商標所有者에게만 주어질 수 있으나 그 소유자는 사용권자를 선임하여 그가 등록된 사용자로서 商標을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등록된 사용자에 의한 상표사용은 商標權者에 의한 사용과 같은 것으로 간주된다.

12. Q : 商標은 어떤 商品이나 서비스를 위해 登錄될 수 있나?

A : 거래에 관계된 모든 商品과 거래과정에서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 「商標法 1955」는 영업명칭의 등록엔 적당치 않다. 영업명으로 별도로 등록된 명칭이 어떤 서비스를 나타내기 위해 또한 사용될 경우 상표로서 등록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러나 또한 영업명은 동법 제24~26조의 규정하에서 식별력있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問8을 보시오)

13. Q : 누가 商標 登錄 出願을 할 수 있나?

A : 상품의 소유자, 공동소유일 경우 그 소유자들은 공동으로 出願해야 한다. 등록은 다음과 같은 조건의 지배를 받는다. 즉 商標은 出願인이 거래과정상 관련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에 관해서 단지 사용될 것이라는 조건

14. Q : 出願인은 그가 출원하기 전에 商標가 登錄될 수 있을지 여부를 알 수 있는가?

A : 모른다. 그렇지만 出願인은 商標가 「商標法 1955」 제 24~26조에 자세히 설명된 登錄基準에 적합한지 아닌지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出願인은 또한 그 商標가 既登錄된 것이나 출원중인 것과 혼돈을 일으킬 가능성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상표조사를 해야 한다. 서비스와 관련, 사용되는 상표도 역시 그 서비스와 밀접하게 관련된 상품에 사용되는 유사한 상표와 혼돈을 일으킬 수 있으며 그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15. Q : 特許局 직원들은 상표조사를 실시하

고 상표등록에 관해 조언을 주는가?

A : 出願人은 또는 그의 대표는 반드시 상표 조사를 해야한다. 특허국 직원들은 登錄가능성의 문제에 관해 조언을 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特許局은 상표업무를 취급하는 登錄辨理士의 리스트를 발행한다.

16. Q : 出願人은 出願을 준비하는데 있어 어떤 도움을 얻을 수 있나?

A : 出願人은 辯護士 또는 辨理士의 자문을 구하거나 特許局 또는 특허지청에서 구할 수 있는 「商標出願人을 위한 안내책자」를 살 수 있다. 이 책자는 상표법, 건본양식과 전형적인 통신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다.

17. Q : 商標가 登錄되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

A : 상당히 각양각색이다. 그러나 출원서가 심사된 후에 등록이 허용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제한은 있다. 출원서는 제출순서에 따라 審査되며 出願人은 어떠한 지체(delay)라도 통보를 받는다. 審査는 要請에 의해, 그리고 합법적인 이유를 제시하면 속히 진행될 수 있다. 속히 진행되는 심사는, 예를들면, 出願人의 상표가 侵害될 우려가 있다든지 침해가 발생했거나, 지체가 출원인에게 불리하게 될 경우 허용된다.

18. Q : 商標의 保護는 언제 시작되는가?

A : 商標가 登錄에 이르게 되면 출원서가 제출된 날부터.

19. Q : 出願書가 심사될때 어떤일이 생기나?

A : 審査官의 통지서사본이 그 출원에 대한 어떠한 반대라도 상세하게 설명되어 출원인에게 송부된다.

出願人은 가능한 빨리 서면으로 응답해야 한다. 만일 아무 이의가 없으면 그 商標는 곧바로 받아들여진다(인정된다).

20. Q : 出願人이 심사관의 拒絶을 구제받을

수 없는 경우 어떻게 되나?

A : 그 출원은 심사관의 첫번째 통지서 날짜 이후 약 15개월 경과된다.

21. Q : 심사관의 拒絶을 극복하면?

A : 商標는 登錄계에 받아들여져 特許局에 의해 상표공보에 공고되는데 이 책자는 1주일에 1번 발행되며 특허국에서 판매용으로 또는 특허지청에서 조사에 쓰일 목적으로 발행된다. 商標는 3개월동안 異議申請이 개방되어 있으며 그후 만일 아무런 성공적인 이의신청이 없으면 등록은 등록표 납부에 따라 주어지며 등록증이 발행된다.

22. Q : 商標權者가 그의 이름 또는 주소를 변경하면 어떻게 되나?

A : 그는 변경사실이 登錄原簿에 기재되도록 반드시 특허국에 알려야 한다. 왜냐하면 통신은(갱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통지를 포함해서) 등록원부상의 주소로 보내지기 때문에 이름이나 주소는 항상 현행의 것이어야 한다는 사실은 중요하다.

23. Q : 商標의 所有權은 변할 수 있나?

A : 商標는 이전, 양도, 또는 相傳등을 통해 所有權이 변할 수 있다. 所有權變更登錄申請은 반드시 登錄계에 취해져야 한다.

24. Q : 商標權者는 반드시 그의 商標가 등록되었음을 표시해야 하나?

A : 그렇지 않다. 그러나 商標가 登錄되지 않았을때 등록되었다고 표시하는 것은 위법이며 따라서 벌금이 적용된다.

25. Q : 어떤 商標라도 다 登錄될 수 있나?

A : 아니다. 다른 상표와의 식별성과 비유사성의 모든 요건들은 별문제로 하고 상표법은 등록될 수 없는 일정한 상표들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이러한 것은 일반적으로 국내·외적으로 중요한 商標들이다.

Ⅲ. 商品 및 서어비스분류

第1部 상품의 류

- 제 1 류 : 농업, 원예, 임업 및 공업, 과학, 사진 용 화학제 : 가공되지않은 인조수지, 가공되지않은 플라스틱 ; 비료, 消化濟 ; 땀질용접착제 ; 식품보존용 화학물질 ; 무두질용물질 ; 공업용접착제
- 제 2 류 : 페인트, 와니스, 래카 ; 녹 및 나무부식방지제 ; 착색제 ; 매염제 ; 천연수지 ; 미술, 장식, 인쇄 및 예술용 箔 또는 분형태의 금속물
- 제 3 류 : 업소용표백제 또는 기타물질 ; 세제, 광택제, 마분제, 연마제 ; 비누 ; 향수, 오일, 화장품, 헤어로션 ; 치약
- 제 4 류 : 공업용기름과 지방 ; 윤활유 ; 면지 흡수습윤결합구조물 ; 연료(자동차용제 포함) ; 발광물, 양초, 심지
- 제 5 류 : 의약품약제, 동물용제제, 위생제품 ; 의약품영양물질, 유아식 ; 반창고, 붕대 ; 치아충전물질, 치아용밀납 ; 소독약 ; 살충제 ; 살균제, 제초제
- 제 6 류 : 일반금속 및 그합금 ; 금속건축물질 ; 금속이동식건물 ; 철도용금속물질 ; 금속의 비전도체피복전선 및 전선 ; 철물, 금속하드웨어의 소물품 ; 금속 파이프 및 튜브 ; 금고 ; 다른류에 속하지 않는 일반 금속물품 ; 광석
- 제 7 류 : 기계 및 기계기구 ; 모터(육상용차량 제외) ; 기계연결구 및 벨트전동장치(육상용차량제외) ; 농업기구 ; 부란기
- 제 8 류 : (손으로 작동하는) 공구, 식탁용 철물(스푼, 나이프, 포크등), 패도(擲力), 면도칼
- 제 9 류 : 과학기계기구, 항해기구, 측량기구, 전기기구, 사진기계기구, 영사기계기구, 광학기계기구, 계중기, 계량기, 신호기, 점검(검사)기구, 구멍기구 및 학습기

- 구 ; 녹음, 음성전송 및 재생기구 ; 마그네틱테이타케리어, 레코딩디스크 ; 자동판매기 및 동전으로 작동하는 기계장치 ; 현금등록기, 계산기, 데이터 처리장치 및 컴퓨터 ; 消化장치
- 제10류 : 수술기구, 의료기계기구, 치과용기계기구, 수의과용기계기구, 의족, 의안, 의치, 정형물품, 봉합물
- 제11류 : 전기기구, 전열기구, 스팀발생기, 요리기구, 냉동기, 건조기, 환풍기, 수급기, 위생기구
- 제12류 : 차량, 육상 / 항공 / 수로용이동기구
- 제13류 : 소형火器 ; 탄약, 투사물 ; 폭발물, 발연물
- 제14류 : (타류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귀금속 물과 그합금 및 도금물 ; 보석, 귀석, 시계류 및 정밀측정기구
- 제15류 : 약기
- 제16류 : 종이, 마분지 및 종이제품(타류에 속하지 않는 것) ; 인쇄물 ; 사진 ; 문구류 ; 문구 또는 가정용 접착제 ; 예술용재료 ; 그림붓 ; 타자기 및 사무용품(가구는 제외) ; 지시 및 교수용재료(기기는 제외) ; 포장용 플라스틱물(타류에 속하지 않는 것) ; 놀이용카드 ; 프린터데이터 ; 프린팅블록
- 제17류 : 고무 · 구타페르카(gutta-percha), 아교, 석면, 운모 및 그 제품으로 타류에 속하지 않는 것 ; 제조용 돌출형태의 플라스틱 ; 포장, 충전, 절연물 ; 금속이 아닌 유연파이프
- 제18류 : 가죽 및 모조가죽과 그 제품으로 타류에 속하지 않는 것, 동물 가죽 ; 트렁크 및 여행용가방 ; 우산, 양산 및 보행용지팡이 ; 채찍, 마구 및 안장
- 제19류 : 건축자료(비금속의) ; 건축용비금속 파이프 ; 아스팔트, 피치 및 역청(瀝靑) ; 비금속이동식건물 ; 비금속기념비
- 제20류 : 가구, 거울, 액자, 나무, 코르크, 갈대,

海外特許情報

등나무, 버드나무, 뽕, 뽕, 상아, 고래 뽕, 조개, 호박, 진주층, 해포석 및 이들의 대체물로 만든제품으로 타류에 속하지 않는것

제21류 : 귀금속이나 그 도금을 하지 않은 가정 또는 주방용품 및 용기 ; 빗 및 스펀지 ; 솔(그림붓제외), 솔재료 ; 세기용품 ; 綢緞 ; 생유리 또는 반가공유리 (건축에 사용되는 유리는 제외) ; 유리그릇 ; 도자기 및 토기로 타류에 속하지 않는 것

제22류 : 로우프, 줄, 그물, 텐트, 천막, 방수시이트, 돛, 포대 및 가방으로 타류에 속하지 않는 것 ; 속재료(고무, 플라스틱제외) ; 원섬유 직물재료

제23류 : 식물에 쓰이는 실

제24류 : 식물 및 그 제품으로 타류에 속하지 않는 것 ; 침대 및 테이블 카바

제25류 : 옷, 신발, 모자(headgear)

제26류 : 레이스 및 자수, 리본 및 끈 ; 단추, 호크단추, 핀 및 바늘 ; 조화

제27류 : 카펫트, 러그(rug), 매트 및 매팅(matting) ; 리노름 및 바닥에 까는 기타 재료 ; 벽걸이(비직물)

제28류 : 게임기구 및 장난감 ; 체육관 및 스포츠용품으로 타류에 속하지 않는 것 ; 크리스마스추리 장식품

제29류 : 고기, 생선, 가공 및 사냥감 ; 고기즙

; 보관용훈제과일 및 야채 ; 젤리, 잼 ; 계란, 우유 및 우유제품 ; 식용유 및 식용지방 ; 셀러드드레싱 ; 보존물

제30류 : 커피, 차, 코코아, 설탕, 쌀, 타피오카, 사교녹말, 가공커피, 밀가루 및 씨리얼(cereal)로 만든 것 ; 빵, 패스트리 및 과자류, 병과 ; 꿀, 당밀 ; 이스트, 베이킹파우더, 소금, 겨자, 식초, 쏘스(셀로드 드레싱 제외) ; 양념, 얼음

제31류 : 농산품, 원예품, 수목 및 타류에 속하지 않는 곡물 ; 살아있는 동물 ; 신종의 과일 및 채소 ; 종자 ; 生木 및 生花 ; 동물식품, 옛기름

제32류 : 맥주 ; 광천수 및 탄산수와 비주류 드링크 ; 과일드링크 및 과일쥬스 ; 시럽 및 음료수용 기타조제물

제33류 : 주류(맥주제외)

제34류 : 담배 ; 흡연기구 ; 성냥

第2部 써어비스류

제35류 : 광고업

제36류 : 보험 및 금융업

제37류 : 건축 및 수산업

제38류 : 통신업

제39류 : 수송 및 보관업

제40류 : 자료처리업

제41류 : 교육 및 오락업

제42류 : 기타

〈白仁洪記〉♣

特許廳·韓國發明特許協會 캠페인

特許管理專擔部署設置 및 職務發明補償制度實施 勸獎

特許管理專擔部署 設置와 職務發明補償制度 實施는 비단 大企業뿐만 아니라 大企業과의 競爭에서 이기고 나아가 中堅企業 또는 大企業으로 跳躍하려는 中小企業에게는 더욱 必要한 制度인 것입니다.

날로 熾烈해지는 國內外 競爭與件속에서 企業經營戰略의 要諦는 持續的인 自體 研究開發을 통한 技術革新과 新製品 開發이 되어야 함을 감안할 때 企業의 經營實情에 맞는 特許管理專擔部署 設置 및 職務發明補償制度의 採擇과 效率的 運用은 큰 도움이 될 것임을 確信합니다. 아울러 이미 이 制度들을 採擇하여 實施하고 있는 企業은 制度의 改善 및 補償金의 引上等 制度運營을 더욱 活性化 함으로써 어려운 經濟環境 속에서 企業의 繁榮을 기하고 나아가 國家産業發展을 위한 積極的이고 獻身的인 參與가 있기를 期待합니다.

貴社의 無窮한 發展을 祈願합니다.